

3. 證券去來法施行規則中改正令

財務部令 第1,879號 1992. 4. 28

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증권거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제1호”를 “증권거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8조제1항본문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 (일괄신고서의 제출) ① 법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사채권(전환사채권·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을 제외한다)으로 하고,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관신고서의 제출일부터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제36조 (정보의 공개) 법 제18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-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

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

2.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

3. 방송법에 의한 방송(특수방송을 제외한다)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

4. 증권거래소가 설치·운영하는 공시방송망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

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
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□ 개정 이유 □

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일괄신고서 제출대상 유가증권, 일임매매의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 □

- 가. 유가증권 일괄신고제도의 적용대상 유가증권을 사채권으로 하고, 그 발행예정 기간을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하며,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정함(제2조의2).
- 나.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발행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(제3조).
- 다.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및 그 임·직원에 있어서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(제13조의2).
- 라. 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연결재무 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시키도록 함(제15조).
- 마.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에 의하여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일임매매의 계약내용, 일임매매의 계좌관리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일임매매의 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(제20조의2).
- 바. 내부자거래의 금지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의 범위를 일간신문에 게재된 후 1일이 경과된 것, 방송을 통하여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것 등으로 정함(제36조).

〈재무부 제공〉